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9997 판결 [원인무효에기한소유권말소등기]

재판경과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9997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3. 11. 20 선고 2003나1081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3. 1. 8 선고 2002가단711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술

피고, 피상고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하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3. 11. 20. 선고 2003나1081 판결

판결선고 2004. 6.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증거에 의하여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되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백의 취소를 허용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3197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피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자백하였다가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앞서의 자백이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한다고 진술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교환계약의 당사자는 여전히 원고와 C이라는 전제하에서 원고의 계약해제권이 발생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결국 피고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으로서 적법하게 취소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재판상 자백의 취소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C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과 C 소유인 임야를 서로 교환하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D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등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C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다시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는 대신 이 사건 채무 등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C이나 피고가 이 사건 채무의 인수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환계약은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히 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채무의 인수에 별다른 장애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였는데, 피고가 수차례 걸쳐 주식회사 D을 찾아가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려 하였으나, 위 은행의 대출규정상 이 사건 채무의 채무자가 변경되기 위해서는

사업단위별로 주요시설을 포함한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자금용도 등이 당초 여신취급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여야 하는데, 피고는 당초 원고의 사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서 그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채무인수를 하지 못한 사실, 이에 피고는 주식회사 D에게 이 사건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는 한편,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는 대신 아예 변제하겠다는 제의를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의 해제만을 주장할 뿐 피고의 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C이나 피고가 채무인수절차를 밟지 못한 점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해제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계약해석 또는 채무인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C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C이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한다고 약정하였을 뿐 채권자인 주식회사 D의 승낙을 얻거나 채무자를 변경하는 절차 등 그 채무인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약정을 한 바 없음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위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즉, C이나 피고가 채무인수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계약해제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채무의 이행인수가 이행불능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채무인수가 이행불능이므로 이 사건 교환계약 자체가 무효로 된다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윤재식 대법관 변재승 대법관 강신욱 주심 대법관 고현철